

【별표 5】

정량평가 심사위원 구성

구분	일반공사	간이형공사	고난이도공사	비고 (유효정족수)
평가위원	내부위원 3인 이상			2인 이상

- ※ 정량평가분야 :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를 제외한 분야
- ※ 내부위원 선정시 계약요청부서 발주담당자(팀장 포함)는 평가위원에서 제외 함

정성평가 심사위원 구성

구분	공사규모 (추정가격)	계	내부위원	외부위원	비고 (유효정족수)
물량·시공 계획심사	1,000억이상	9인 이상	4인 이상	5인 이상	6인 이상
	1,000억미만	7인 이상	3인 이상	4인 이상	5인 이상

- * 단, 외부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%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- ※ 정성평가분야 :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 분야
- ※ 내부위원 선정시 계약요청부서 발주담당자(팀장 포함)는 평가위원에서 제외 함
- ※ 발주건의 특성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요청부서의 장은 심사 부서와 협의하여 위원 구성 기준을 위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, 관련 법령 및 고시에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.
- ※ 외부평가위원의 수당지급은 우리공사 「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」을 따른다.